

2019년 4분기 도시재생실 예산전용 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, 2019회계연도 4분기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

예산전용 금액 : 총 86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	예산액	전용액		전용 후 예산현액
부서명	정책	단위	세 부	통계목		증	감	
총 계						860,000	860,000	
소 계					17,338,000	600,000	600,000	17,338,000
한옥건축자산과	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	전통문화계승발전(일반)	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	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(403-02)	14,038,000	-	600,000	13,438,000
			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지원 사업	민간자본 사업보조 (402-01)	3,300,000	600,000	-	3,900,000
소 계					1,077,578	260,000	260,000	1,077,578
도시활성화과	도시기능회복 및 활성화	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관리등(도시개발)	전통시장 주변 지역상권 재생사업	사무관리비 (201-01)	280,000	-	260,000	20,000
				자치단체 경상보조금 (308-01)	300,000	60,000	-	360,000
				시설비 (401-01)	497,578	200,000	-	697,578

□ 전용사유

○ [한옥건축자산과] 한옥 수선 등에 대한 공사비 보조금 지원 신청 증가로 소요액 예산 전용

- 한옥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예산이 '19년도 부분수선 지원금 상향 및 지원 신청 증가로 인하여 11월초 조기 소진됨에 따라,
-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비용 지원이 결정된 한옥 등의 수선 및 신축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,
- 부득이 동일 단위사업 내 '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'의 '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' 중 600,000천원을 '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'의 '민간자본사업보조(자체재원)'으로 전용하였음.

※ '19.03.28.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: (종전) 보조 10백만원 (한옥보전구역 15백만원) → (개정) 보조 20백만원 + 융자 10백만원

○ [도시활성화과]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전용

- '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' 운영기간이 당초 '19년 12월에서 '20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추가소요 사업비 지원 필요
 - ※ 6개 자치구 대상 추가소요자금 파악결과 대상지별 10백만원 요청
- '20년 시범사업지(3개소)에 대한 활성화계획의 기본구상과 미선정지역 (3개소)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 실시
- 이에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일 세부사업내 사무관리비 예산 중 60,000천원을 '자치단체경상보조금'으로, 신규 용역에 200,000천원을 '시설비'로 일부 전용하였음